

보도시점 2024. 5. 23.(목) 11:00
< 5.24.(금) 조간 >

배포 2024. 5. 23.(목)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가·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 '23년: (하절기) 평균 4.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 ~ 4.30. 사용
'24년: (하절기) 평균 5.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 1. ~ 5.25. 사용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	책임자	과 장	박은표 (044-203-5160)
		담당자	사무관	이상은 (044-203-5161)



참고1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①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

구 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원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바우처	314,000원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지원액	367,000원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4.9.30.까지 신청 필요)

- ☐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①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 ②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신청기간) '24. 5. 29.(수) ~ '24. 12. 3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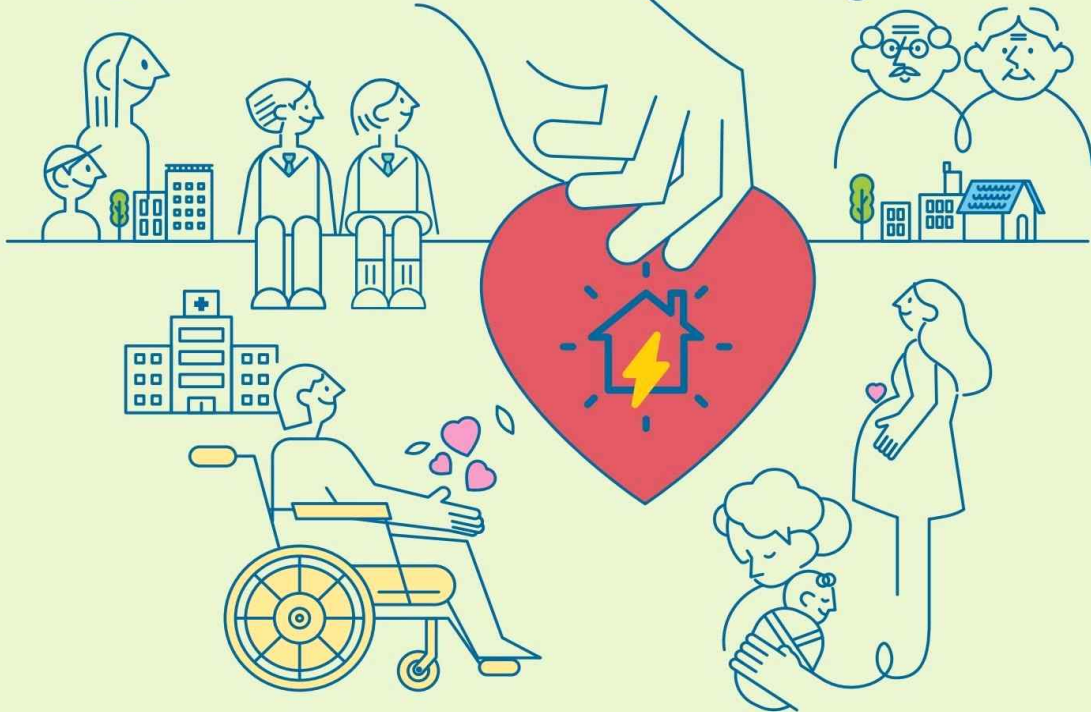
☐ 사용기간

구 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 7. 1. ~ '24. 9. 30.	▶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 10. 1. ~ '25. 5. 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4. 10. 4. ~ '25. 5. 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 ☐ (지원체계)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바우처 사용(수급자) → 정산(전담기관 등)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사용안내

구분	요금차감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1)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단계를 수 있을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1.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지원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임

* 다만,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2. 금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❶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❷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문의 또는 ❸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됨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 다만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의 대리 신청, ❷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❸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3. 작년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기간 중 주소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 드림
 -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함
 -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함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2024년도 지원 단가는?

- 에너지바우처는 ❶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국민행복카드 방식) 또는 ❷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
 - *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 위 2가지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하지만,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함
 - *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24년도 지원 단가는 세대원수 별로 상이하나,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 수준임

(단위: 원)

세대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夏	冬	夏	冬	夏	冬	夏	冬
367,000	40,700	254,500	58,800	348,700	75,800	456,900	102,000	599,3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5.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는 '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시 '24년 10월 4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임
-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24. 7. 1. ~ '24. 9. 30.) 및 동절기('24. 10. 1. ~ '25. 5. 25.)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 (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24. 10. 4. ~ '25. 5. 25.)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됨

6.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①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②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③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④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함
 -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바람
- 동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임
 -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짐
- 다만,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7. 2023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지는 점은?

-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7개월 → 8개월)하여 추진할 계획임
 - *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23년) 10월~차년도 4월 → ('24년) 10월~차년도 5월
-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소폭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임
 - * 평균 지원단가: ('23년) 34.7만원(夏 4.3, 冬 30.4) → ('24년) 36.7만원(夏 5.3, 冬 31.4)
-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였음
 - * ('23년) 하절기바우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 처리 → ('24년) 하절기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 가능토록 개선